

인천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6. 21(월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6. 4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6. 4
- 라. 상정일자 : 2010. 6. 15.(제1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)
 - 제안설명 : 기획관리실장 최현길
 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」이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,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,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수집·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참조체계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관리하여야 함.(안 제3조)
-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-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수수료를 규정함.(안 제5조,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동 조례의 전부개정안은

- 「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」이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로 전면 개정('09.2.6)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공간정보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
- 그동안 구축해 온 지리정보체계와 국토공간에서 생산된 정보체계를 산하 기관, 민간기업 등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연계·통합하여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「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」로 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임.

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 용어정의 제4호의 “관리기관”을 정의함에 있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(시 본청 및 소속기관, 군·구) 및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·공단이 “공간정보”를 생산·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.
- 안 제5조 “공간정보의 제공”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안 제8조“보안관리”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이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.
-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이용자에게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수수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규정한 조항임.

동 조례안은

- 향후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시의 정책 및 행정자료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간정보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공간정보의 제공사례
- 많은 일반시민들이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

< 답 변 >

- 최현길 기획관리실장
 - 당초에는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시작하였음. 상수도 정보통신 등 3차원 지리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도로굴착 자료 등 행정기관, 일반자료로 활용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윤지상, 김소림, 이근학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찬성 : 5명)

7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붙 임 : 인천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
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地理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地理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간정보"란 지상·지하·수상·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.
2. "공간정보체계"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·저장·가공·분석·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.
3. "공간정보참조체계"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 식별번호를 말한다.

4. “관리기관”이란 공간정보를 생산·관리하는 시본청 및 소속기관, 군·구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·공단을 말한다.
5. “유관기관”이라 함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.
6. “정보이용자”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) ① 관리기관은 수집·생산하는 공간정보를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정보참조체계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·구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간정보협의회)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2.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공간정보의 제공)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공공측량성과에 한하며, 법령과 제8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수수료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공간정보 자료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7조(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) ① 제5조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제공 수수료를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.

제8조(보안관리) ①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공간정보 제공 신청서(제5조제2항 관련)

①성명(법인명)	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③주소			
④전화번호 (이동전화)	()	⑤전자우편	
⑥공간정보의 종류		⑦신청지역	
⑧사용용도		⑨제공방법과 수량	- 종이출력 () 축척: 매수: 축척: 매수: - 전산매체 ()
⑩비고			

※ 작성요령

⑥공간정보의 종류 : 출력도면, 수치지도

⑦신청지역 : 지번 또는 도엽번호(Index)를 표시

⑧사용용도 : 학술연구, 용역사업관련 등

⑨제공방법과 수량 :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○를 표시, 종이출력의 경우 축척과 매수 기재

[별표 1]

공간정보제공 종류와 수수료(제6조제2항, 제7조제1항 관련)

종 류	금 액	비 고
출력도면	· 「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」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적용· 산정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매년 고시하는 금액	※ CD 등 저장 매체는 사용자 부담
수치지도 벡터데이터 (1:1000 축척)	·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적용	

[별표 2]

공간정보제공 수수료 감면대상과 감면율(제7조제2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(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관련) ○ 재난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○ 상·하수도, 전기, 가스, 통신, 송유관, 지역난방 등 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체계구축에 제공되는 경우 	100(%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·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○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전문기술지원기관이 순수 학술연구,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에 의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(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관련) 	50(%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민 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, 재해예방, 구급체계 구축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	25(%)